

선거일 등 공고

2021년 1월 18일에 실시하는 제41대 대한체육회장선거의 선거일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1월 17일

중앙선거관리위원회



1. 선거명 : 제41대 대한체육회장선거

2. 선거일시 및 투·개표장소 : 2021. 1. 18.(월), 올림픽 홀(서울 올림픽공원 내)

※ 행사 개최(13:00) → 후보자 소견발표 → 투·개표(투표는 150분 이내)

3. 선거인 : 「대한체육회 정관」 제24조제2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

4. 후보자등록에 관한 사항

가. 자격 및 등록요건 : 「대한체육회 정관」 (이하 '정관') 및 「대한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」 (이하 '규정')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[별지 참조]

※ 대한체육회 또는 추천단체(회원종목단체, 시·도체육회, 시·군·구체육회) 비상임 임원의 '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' 제출기한 : 2020. 11. 20.(금) 18시까지

※ 대한체육회 또는 추천단체(회원종목단체, 시·도체육회, 시·군·구체육회) 상임 임원·직원의 사직기한 : 2020. 11. 20.(금)까지



나. 신청기간 : 2020. 12. 28.(월) ~ 29.(화) [2일간] 매일 09:00 ~ 18:00

다. 등록장소 : 중앙선거관리위원회

라. 구비서류

서 류 명	수 량	비고
○ 후보자등록신청서	1부	
○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		
▪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번호 포함)	1부	
▪ 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	1부	
▪ (체육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있는 후보자의 경우)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(정관 제30조제1항의 단체*에 한함)가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확인서 *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9호 기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	1부	필수서류 (미제출시 등록무효)
▪ 정관 제24조의2제1항 및 규정 제15조제2항의 후보자 등록 의사 또는 정관 제24조의2제6항 및 규정 제15조제7항의 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※ 체육회 및 추천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경우에 한함	1부	
○ 기탁금(7천만원)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1부	
○ (체육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없는 후보자의 경우) 체육단체 소속 경력 부존재 확인서	1부	
○ 회장결격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인서약서	1부	
○ 기타 관리상 필요서류		규정상 제출 필요서류
▪ 인영신고서	1부	
▪ 이력서	1부	
▪ 사진(최근 3개월 이내, 컬러 3.0cm×4.0cm) ※ 전자파일 포함	2매	

5. 선거운동

○ 선거사무소 설치(선거사무장 1인 포함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음)

※ 선거사무소 게시물의 설치 및 변경 포함

- 선거공보 발송
- 전화 이용 선거운동
- 정보통신망(SNS 포함) 이용 선거운동
- 윗옷 및 어깨띠, 명함 이용 선거운동
- 대한체육회(선거운영위원회) 주최 후보자 정책토론회

- 대한체육회(선거운영위원회) 이외 단체 주최 토론회

※ 후보자 전원 동의시에 한함

- 선거일 당일 후보자 소견발표

[선거사무장, 선거사무원은 전화, 정보통신망, 윗옷 및 어깨띠·명함 이용 선거운동만 가능]

6. 후보자의 선거공보 제출

- 제출기한 : 2020. 12. 30.(수)까지
- 제출수량 및 장소 : 추후 별도 공고(경기도위원회)

7.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등

- 열람기간 : 2020. 12. 26.(토) ~ 28.(월) [3일간]
- 열람장소 및 방법 등 : 대한체육회에서 별도 안내(☎ 02-420-431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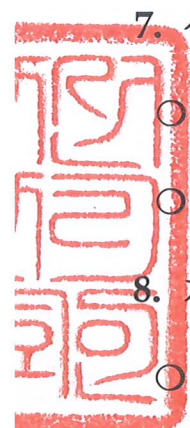
8. 기타사항

- 후보자등록 문의 :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과(☎ 02-503-7710)

※ 단, 후보자등록 관련 제출서류 발급 문의는 대한체육회(☎ 02-420-4314)

- 소견발표 및 투·개표 문의 :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(☎ 031-259-4817)

- 위반행위 신고·제보 등 문의 : 대한체육회 내 상주 전담반(☎ 070-4221-7604)



[별지]

대한체육회장선거 후보자 결격사유

근거	조항	내용	비고
		<p>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</p> <p>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<p>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p> <p>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p> <p>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</p> <p>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</p> <p>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<p>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(횡령, 배임) 및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</p>	

대한체육회장

제30조 제1항



근 거	조 항	내 용	비 고
		<p>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「형법」 제314조 및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</p> <p>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</p> <p>가.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</p> <p>나. 승부조작, 편파판정, 횡령·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</p> <p>다.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</p>	
대한 체육회 회장선거 관리규정	제15조 제 2 항	체육회 또는 추천단체의 비상임임원으로서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90일(2020. 11. 20.)까지 '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'를 체육회에 제출하지 않은 자	
	제15조 제 7 항	체육회 또는 추천단체의 상임임원 및 직원으로서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(2020. 11. 20.)까지 사직하지 않은 자	

